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제정 2009. 03.
 개정 2013. 02.
 개정 2014. 06.
 개정 2014. 08.
 개정 2015. 02.
 개정 2019. 03.
 개정 2019. 0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3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3.06)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라 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유예’라 한다.(개정 2019.03.06)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라 함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자를 말한다. 이하 ‘유예자’라 한다.(개정 2019.03.06)

제3조 (적용대상) ①“학사학위취득의 유예”는 학사과정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3.06)

②삭제(2014.8.25)

제4조 (유예기간) 유예는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1학기과 여름학기 또는 2학기과 겨울학기) 이내로 하며, 유예신청은 총 2회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4.8.25)(개정 2019.03.06)

제5조 (유예절차) 유예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사부총장 또는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9.03.06.)(개정 2019.8.21.)

제6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9.8.21.)

1.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1조의2제2항1호에서 정한 졸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2. 신청일 현재 1회 유예 중인 자.

①삭제(2012.9.7)

②(개정 2015.02.23.)(개정 2019.8.21.)

제7조 (신청시기) ①신청 시기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졸업학점과 졸업이수학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되는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말로 하며, 신청시기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학사력으로 정한다.(개정 2019.8.21.)

②삭제(2012.9.7.)

제7조의2(유예확정) 유예의 확정은 학칙 제9조 및 제4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9.8.21.)

제8조 (유예조건) ①유예자는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9.03.06)

②유예자는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을 수강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는 등록금 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3.06)

③유예자가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9.03.06)

④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 다만,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제9조 (유예자 권리와 의무) 유예자는 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유예자는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학점포기는 할 수 없다(개정 2014.06.24)(개정 2019.03.06)

제9조의2(유예자의 졸업처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유예를 한 경우 다음학기 졸업시점의 졸업기준으로 재 사정하지 않으며, 유예확정 시기의 졸업사정 결과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 한다.(신설 2014.06.24.)(개정 2019.03.06)

제10조 (기타사항) ①유예자 중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처리 및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03.06)

②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별지에서 정하는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사부총장 또는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개정 2019.03.06.)(개정 2019.8.21.)

③제2항에서 정한 유예 취소 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환불은 본 대학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3.06)

④유예자는 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단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처리 및 학위를 수여 한다.(개정 2014.06.24.)(개정 2019.03.06)

⑤유예자에게는 재학증명서를 대신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03.0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0학년도 현재 3학년 이하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4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제3조제2항, 제4조)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